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uropean Union, Non Tariff Barriers Issue

EU,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수입 식품에 강화된 항생제 기준 적용 계획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한 위임규정안, 수출 기업은 규정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EU는 동물 항생제의 사용을 2030년까지 50% 감소시키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EU 국가로 수입되는 동물 및 동물 유래 제품에 강화된 항생제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위임규정안 초안을 제정함. 이는 식품 생산용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한 EU 수입 요구사항의 보완 규정인 (EU) 2017/625을 추가 보완한 것으로, 'EU로 동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제3국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수출국 요건에 강화된 항생제 관리 기준을 추가함

위임규정안에 추가 규정된 항생제 관련 강화 기준은 하기와 같으며, 관련 규정 항목은 뒷장의 정리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해당 규정은 2022년 12월부터 적용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위임규정안 초안] EU에 동물 및 동물 유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추가된 수출국 요건

- 1. 관리 계획: 약리 물질, 살충제 및 오염물질 관련 다년간의 국가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약리 물질일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약리학적 활성물질의 잔류물이 없음을 보장
- 금지 물질의 경우: 특정 물질(베타작용제, 스틸벤, 갑상선기능 항진제,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게스타겐 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구분 생산 및 추적시스템 구비
- 2. 시설 조건: EU 규정을 준수하는 시설(EU 규정에 언급된 원료를 취급하고, 승인된 잔류물의 모니터링 계획이 있는 원료만 취급하는 시설)에서 준비 및 발송된 제품
- 3. 증명 서류 제출 : 공식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 등 제출 필요

위임규정안의 초안이 시행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EU로 수입이 승인된 한국의 동물성 식품 승인 품목(*)을 확대하고자 할 때 수출국 심사 요건이 강화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항생제 내성 규제 강화 관리 계획에 따라 <u>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성분에 대한 항생제 자류기준 또는 금지 성분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수 있음.</u> 따라서 EU로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관련 규제의 시행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기준, <u>EU에서 수입이 승인된 한국의 동물성 식품 품목은 수산물류</u>만 해당하며, <u>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은 조건부 승인</u> 품목으로 승인된 제3국에서 생산된 해당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은 EU로 수출할 수 있음





※ [위임규정안 초안] 동물성 복합식품의 수입 추가 요건 관련 규정 항목 [제4조] EU 수입을 위한 제3국 또는 그 지역의 식품 생산용 동물 제품 및 동물 제품의 추가 요건

(EU) 2017/625의 127조 (3) 항의 EU 수입이 가능한 제3국 및 그 지역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하는 항목

EU 수입이 가능한 제3국 및 그 지역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 ① 수출국의 동물성 식품, 동물 의약품 등의 입법
- ② 생산, 제조, 취급, 보관, 발송 위생 조건
- ③ 관련 제품 판매 경험 및 수출 관련 공식통제 결과
- ④ 동물. 제품의 평가 및 이행 결과
- ⑤ 인수공통전염병 통제 프로그램 시행 여부
- ⑥ 수출국의 약리 물질, 농약 및 오염물질 관련 요건

[제5조] 식품 생산용 동물, 동물성 식품 및 복합식품의 약리학적 활성 물질과 잔류물에 관련한 EU 가입 시 추가 요건

- (1) (EU) 2017/625에 추가적인 사항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통제계획이 있는 제3국의 식품 생산용 동물, 동물성식품, 복합식품만 EU로 수입할 수 있음
- (a) 약리학적 활성 물질 사용에 관한 연합의 요구사항, 약리학적 활성 물질의 최대 잔류한계, 농약 및 오염물질의 최대 잔류수준 및
- (b) 해당 규정의 8조~12조에 명시된 추가 조건

출처

European Commission,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the Union of consignments of food-producing animals and certain good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